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555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측 인사는 과잉대표되고 있는 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투명성·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아가, 실제 위원 구성 현황을 반영

하여 전문가위원회의 ‘관련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6명 이내”를 “1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를 “관련된 전문가”로, “5명 이내”를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5명 이내”를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명 이내”를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 · 운영”을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과 위촉 · 지명”으로 한다.

가.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상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 ·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② (생략)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6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u>5명</u>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u>5명</u> 이내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6명</u> ----- ----- ----- ----- ----- ----- ----- 1. ----- 관련된 전문가----- ----- ----- ----- <u>5명</u> 2. ----- <u>사람으로서</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u> 가.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u>3명 이상</u>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u>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상</u>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 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5명</u> <u>이내</u> ④ · ⑤ (생 략) ⑥ 시 · 도 및 시 · 군 · 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 보장위원회의 <u>구성 · 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 ----- <u>5명</u>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구성 · 운영 및 위원</u> <u>의 구체적인 자격과 위촉 · 지</u> <u>명</u> ----- -----.